##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65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박덕흠

김소희 · 정성국 · 김상훈

서천호 · 최수진 · 조경태

박준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의 합의 종용 및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의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건과 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 직전 공탁을 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받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렀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음.

2024년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데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일부 감형된 선고를 내렸음. 평소 집착과 스토킹을 해온 그에게 1심은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3년 2개월로 형량을 낮추어졌음. 재판부는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않을 수 없다는 감형 이유를 밝혔으나 유족은 구형이 10년 나왔다는 것은 교제폭력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트리게 되었음.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 피해 회복 요건에 포함되는 요소로 작용 되고 있음. 이러한 기습적인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법률 제 호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해당"을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받은 내 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공탁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u>해당</u>	<u>변론</u>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해당		
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		
	공탁에 관한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u> &lt;신 설&gt;</u>	⑤ 법원은 제4항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화, 전		
	자우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		
	<u>하여야 한다.</u>		
<u>④</u> · <u>⑤</u> (생 략)	<u>⑥</u> ・ <u>⑦</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